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법보좌관 이경규
건명	방선희 외 2명 소유물건 (2024타경107203)
감정서번호	가람 1124-12-00084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가람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KAARAM APPRAISAL CO., LTD.  
TEL:055)245-0054 FAX:055)245-0053



# 감정평가서 가격심사 인증서

인증서번호 : 2024-10062

심사일자 : 2024-12-31

평가서번호	1124-12-00084	본·지사명	경남지사
평가의뢰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법보좌관 이경규	평가목적	경매
담당평가사	윤덕봉	기준시점	2024-12-24
물건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315 호텔엠에스 제호텔엠에스동 제2층 제201호		
감정평가액	이십일억육천만원정 (₩2,160,000,000.-)		

본건은 당 법인의 감정평가심사규정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한 복수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물건으로서 본 감정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적정" 의견으로 심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감정평가심사위원회 위 원 장



본 감정평가서는 당 법인의 감정평가심사규정에 의거 공정·적법하게 수행되었기에 본 가격심사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주)가람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박영학



#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윤덕봉



(주)가람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지사장 서현주



감정평가액	이십일억육천만원정(₩2,160,000,000.-)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법보좌관 이경규	감정평가목적	경매
채무자	-	제출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경매2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방선희 외 2명 (2024타경107203)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2024.12.24	2024.12.23 ~ 2024.12.24
		작성일	2024.12.27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원/㎡)	금액(원)
구분건물	3개호	구분건물	3개호	-	2,160,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2,160,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m <sup>2</sup> )		감정평가액(원)	비 고	
					공 부	사 정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6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315 호텔엠에스	업무시설, 숙박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15층					
					업무시설 (기타일반 업무시설)	지하4층	680.45		
					"	지하3층	1,343.39		
					"	지하2층	1,455.37		
					"	지하1층	1,455.37		
					숙박시설 (관광호텔)	1층	1,178.33		
					숙박시설 (관광호텔)	2층	1,125.48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3층	1,124.1		
					숙박시설 (관광호텔)	4층	1,032.01		
					업무시설 (오피스텔)	5~13층	1,032.01		
숙박시설 (관광호텔)	14층	1,032.01							



#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감정평가액(원)	비 고
					공 부	사 정		
(1-2)				(내)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 2층 203호	174.64	174.64	430,000,000	비준가액 (집합건축물 대장상 공용 면적 포함: 287.4045㎡) 집합건축물 대장 기준
			소유권 1.-----	117.999	-----	적정지분		
			대지권	1,653				
							배분내역 129,000,000 301,000,000	
<b>합 계</b>							<b>₩2,160,000,000</b>	
				이 하	여	백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 감정평가의 개요

###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소재 "합포수변공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상가)으로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 2. 감정평가의 대상 물건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315 [도로명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67]		
건물명	호텔엠에스		
건물 개황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지하/지상)
	1,653	20,674.58	-4/15
	주구조	주용도	사용승인일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업무시설, 숙박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2006.02.13

기호	층 / 호수	이용상황	전유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대지권 면적(㎡)
1	2 / 201	위락시설 (단란주점)	417.38	269.5011	686.8811	적정지분
1-1	2 / 202	종교시설	304.64	196.7052	501.3452	적정지분
1-2	2 / 203	관광숙박시설	174.64	112.7645	287.4045	적정지분
합계			896.66	578.9708	1,475.6308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12월 24일임.

###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대상은 2024년 12월 23일 ~ 2024년 12월 24일 현장을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의 조건

### 가.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나. 감정평가의 조건

없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5. 기타 참고사항

- 가. 본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자의 부재로 인하여 내부확인이 곤란한 바, 인근 유사물건 및 관련 공부와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및 응찰시 내부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등에 대한 재확인이 요망됨.
- 나. 본건은 귀 제시목록상 201호 1개호로 제시되어 있으나, 현황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2020.09.22일자 기준 201호(1,037㎡)가 201호(417.38㎡), 202호(304.64㎡), 203호(174.64㎡)로 전유부 분할 되었는데, 201호를 1), 202호를 1-1), 203호를 1-2)로 기호를 부여하였으며, 전유부 분할로 인해 전유면적이 140.34㎡ 감소하였는바, 이를 반영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 다. 본건 기호 1)~1-2)는 기준시점일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유부 분할로 인한 소유권 대지권이 미 반영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대지권 지분이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 응찰 및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I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

###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및 감정평가 방법

#### 가.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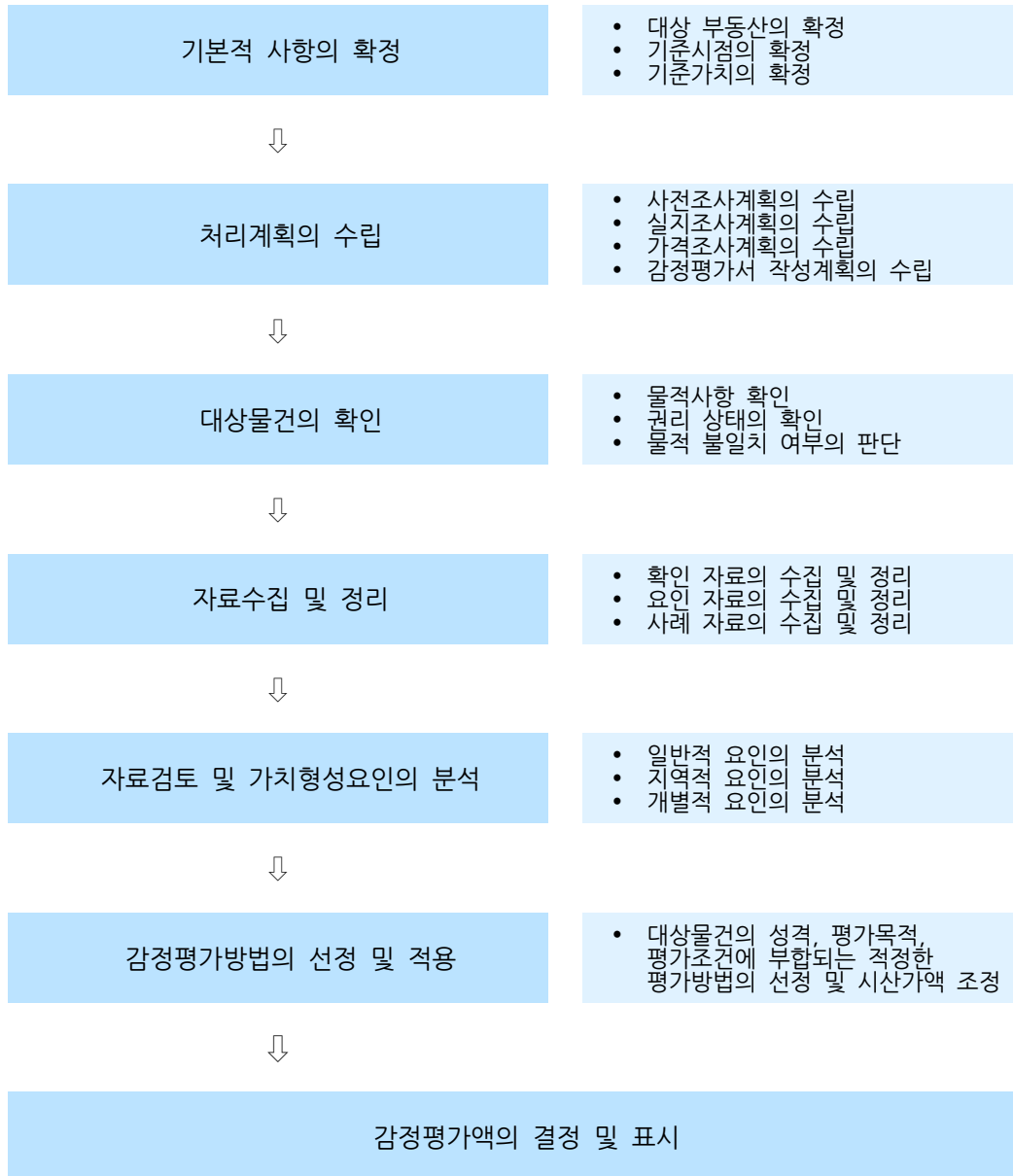
## 다.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 1)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토지, 건물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관행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거 인근 지역 내 유사한 부동산의 일반적인 거래사례와 위치,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치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대지권인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대상물건은 인근 유사 부동산 임대사례 포착이 곤란하여 대상물건의 특성상 원가법이나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바,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감정평가전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2) 본건의 면적, 구조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등의 공부를 기준하였으며,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거하여 확인하였음.
- 3) 본건의 내부구조도는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 현황도를 기준하여 작성하였는바,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3. 감정평가 절차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를 근거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II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

### 1.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층수(타입)	전유면적 기준 가격수준(원/㎡)	비고
본건 인근	근린생활시설	2층	2,000,000~2,500,000원/㎡	본건 유사

### 2. 인근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수	이용 상황	전유면적 (㎡)	거래가격 (원)	전유면적 기준 단가(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오동동 ****- 포세이돈하우스 * / ***	근린생활 시설	127.55	400,000,000	3,136,025	2019.03.08	2017.05.12
#2	중앙동2가 **- 동방하이퍼세븐 * / ***	근린생활 시설	95.22	227,000,000	2,383,953	2023.10.18	2007.04.02
#3	양덕동 ****- 메트로jbs퀘어시티 주건축물 * / ***	근린생활 시설	57.82	398,060,000	6,884,469	2024.04.17	2024.04.04

※ 사례의 거래가격 및 거래시점은 해당 자료의 출처를 기준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3. 인근 평가전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수	이용 상황	전유면적 (㎡)	감정평가액 (원)	전유면적 기준 단가(원/㎡)	기준시점 평가목적	사용승인일
#ㄱ	동성동 *** 호텔엠에스 * / ***	근린생활 시설	45.337	423,000,000	9,330,128	2024.05.22 경매	2006.02.13
#ㄴ	오동동 ***- 포세이돈하우스 * / ***	근린생활 시설	127.55	408,000,000	3,198,746	2023.03.21 경매	2017.05.12
#ㄷ	오동동 ***- 세진빌딩 * / ***	근린생활 시설	279.97	576,000,000	2,057,363	2024.03.28 담보	2004.12.07
#ㄹ	양덕동 ***- 메트로j 스퀘어시티 주건축물 * / ***	근린생활 시설	57.82	384,000,000	6,641,301	2024.04.11 담보	2024.04.04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V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

### 1. 비교사례의 선정

#### 가. 비교사례의 선정 및 그 사유

상기 참고자료 중 대상과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위치적 유사성이 있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서 물적 유사성이 있어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 가능한 사례인 다음의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본건 기호	비교사례 선정
1 ~ 1-2	#1

#### 나. 선정된 비교사례

사례는 기준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나, 본건과 비교가능성이 있는 최근 3년 이내의 거래사례를 찾기가 어려운바, 상기사례를 적용하였음.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수	이용 상황	전유면적 (㎡)	대지권 면적(㎡)	거래가격 (원)	전유면적 기준 단가(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오동동 ***- 포세이돈하우스 *층 / ***호	근린생활 시설	127.55	33.034	400,000,000	3,136,025	2019.03.08 2017.05.12

※ 거래사례의 거래가격 및 거래시점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결정의견	본 비교사례는 실지조사 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사례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
사정보정치	1.000

## 3. 시점수정

### ■ 본건 1 ~ 1-2) / 사례기호 #1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4조 제 2항 제 2호의 지가변동률, 한국은행에서 조사·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는 본건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미약한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경남(집합상가) 자본수익률을 기준시점 현재 지수가 발표되지 않은 경우 최종발표지수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하였음.

(출처: 한국부동산원 조사발표)

지역 (산정기간)	유형	시점 수정치	비고(계산식)
경남 (2019.03.08~2024.12.24)	집합상가	-0.282% (0.99718)	$(1-0.0013*24/90)*(1-0.0022)*(1-0.0003)$ $*(1+0.0033)*(1-0.0066)*(1-0.0021)*$ $(1-0.0007)*(1-0.0005)*(1-0.0004)*$ $(1+0.0056)*(1+0.0053)*(1+0.0047)*$ $(1+0.0046)*(1+0.005)*(1+0.0039)*$ $(1-0.0012)*(1-0.0033)*(1-0.0018)*$ $(1-0.0018)*(1-0.0023)*(1-0.0028)*$ $(1-0.0022)*(1-0.0034)*(1-0.0034*85/92)$ $\approx 0.99718$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4. 가치형성요인 비교

### ■ 상업용 [본건 기호 1 / 비교사례 #1]

요인 구분	세부 항목	검토의견	격차율
건물 외부 요인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대등함.	1.00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가로폭, 구조 등)		
건물 내부 요인	단지내 주차의 편리성	건물의 관리상태 등에서 열세함.	0.75
	건물전체의 공실률		
	건물의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호별 요인	층별 효용	대등함.	1.00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등함.	1.00
개별요인 비교치			0.75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상업용 [본건 기호 1-1~1-2 / 비교사례 #1]

요인 구분	세부 항목	검토의견	격차율
건물 외부 요인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대등함.	1.00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가로폭, 구조 등)		
건물 내부 요인	단지내 주차의 편리성	건물의 관리상태 등에서 열세함.	0.75
	건물전체의 공실률		
	건물의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호별 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 등에서 우세함.	1.05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등함.	1.00
개별요인 비교치			0.788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text{시산가액} = \text{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가치형성요인비교}$$

기호	비교 사례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정단가 (원/㎡)	면적 (㎡)	산정가액 (원)	시산가액 (원)
1	#1	3,136,025	1.000	0.99718	0.750	2,345,386	417.38	978,917,209	979,000,000
1-2	#1	3,136,025	1.000	0.99718	0.788	2,464,219	304.64	750,699,676	751,000,000
1-3	#1	3,136,025	1.000	0.99718	0.788	2,464,219	174.64	430,351,206	430,000,000
합 계							896.66	2,159,968,091	2,160,000,000

# 구분건물 개별요인 분석표-2

## 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 1.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을 상기 “감정평가액결정에 참고한 자료”(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거래동향, 감정평가전례) 등과 비교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본건의 평가목적(경매)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2. 감정평가액의 결정

기호	건물명 층/호수	공부 면적 (㎡)	사정 면적 (㎡)	감정평가액(원)	비고
1	호텔엠에스 2/201	1,037	417.38	979,000,000	비준가액
1-1	호텔엠에스 2/202		304.64	751,000,000	비준가액
1-2	호텔엠에스 2/203		174.64	430,000,000	비준가액
결정된 감정평가액		2,160,000,000			

#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4. 이 용 상 태           | 7. 공부와의 차이 |
| 2. 교 통 상 황   | 5. 냉난방설비 및 주요설비      | 8. 임대관계    |
| 3. 건물의 구조    | 6.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상태 | 9. 기 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소재 "합포수변공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2. 교 통 상 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자유로우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지하4층/지상 15층 건물 내 2층 201호 외 2개호로서, 사용승인일은 2006.02.13일이며,

외벽 : 화강석, 드라이비트 마감 등  
바닥 :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 4. 이 용 상 태

본건은 기준시점일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 5. 냉난방설비 및 주요설비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및 소화전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4. 이 용 상 태           | 7. 공부와의 차이 |
| 2. 교 통 상 황   | 5. 냉난방설비 및 주요설비      | 8. 임대관계    |
| 3. 건물의 구조    | 6.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상태 | 9. 기 타     |

## 6.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광로3류(폭 40m~50m)(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 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 8. 임대관계

없 음.

## 9.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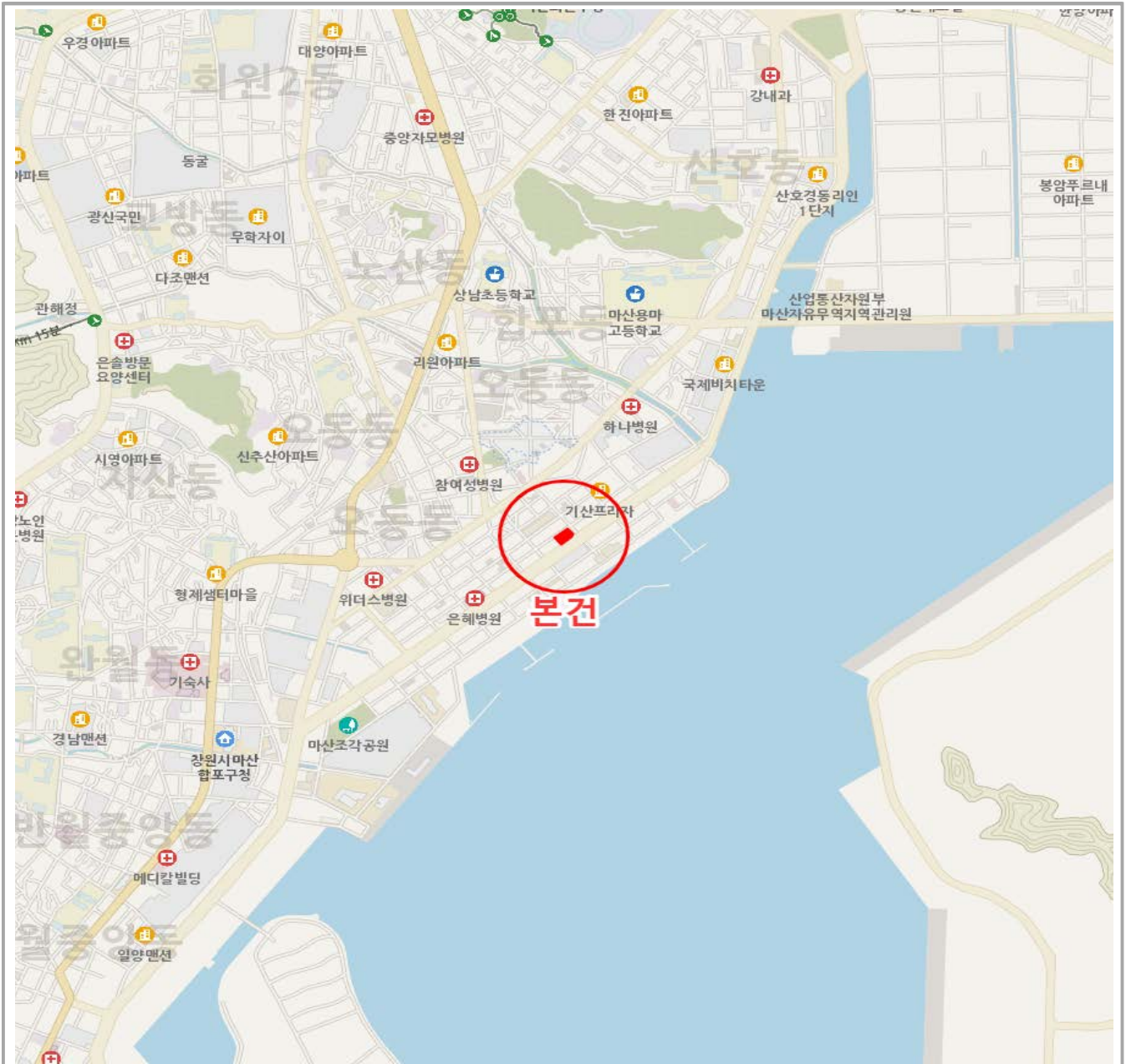
본건은 귀 제시목록상 201호 1개호로 제시되어 있으나, 현황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2020.09.22일자 기준 201호(1,037㎡)가 201호(417.38㎡), 202호(304.64㎡), 203호(174.64㎡)로 전유부 분할 되었는데, 201호를 1), 202호를 1-1), 203호를 1-2)로 기호를 부여하였으며, 전유부 분할로 인해 전유면적이 140.34㎡ 감소하였는바, 이를 반영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315 호텔엠에스 2층 201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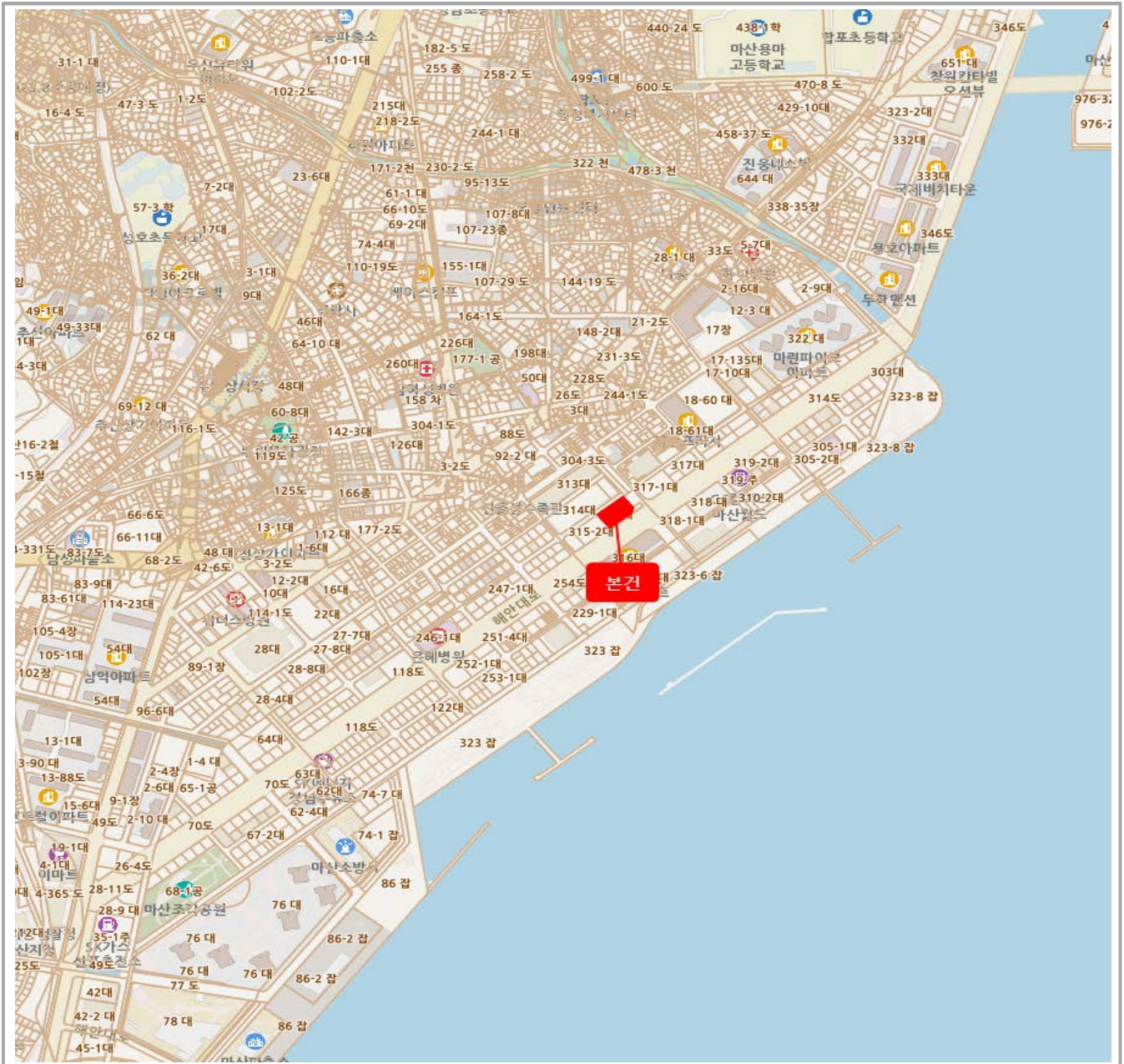


# 상세 위치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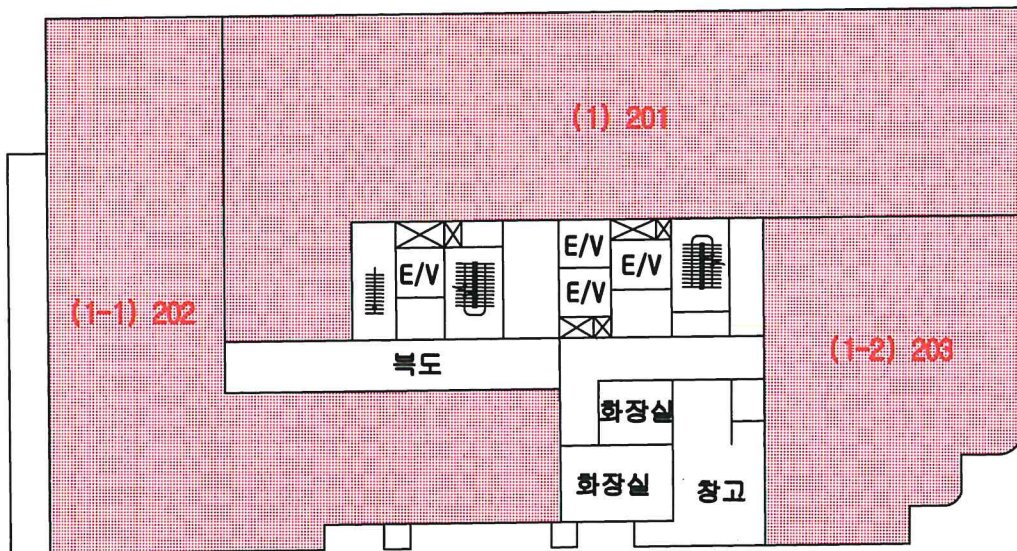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315 호텔엠에스 2층 201호 외



# < 호 별 배 치 도 >



S = NON SCALE



本件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315  
호텔엠에스 2층 201호, 202호, 203호

#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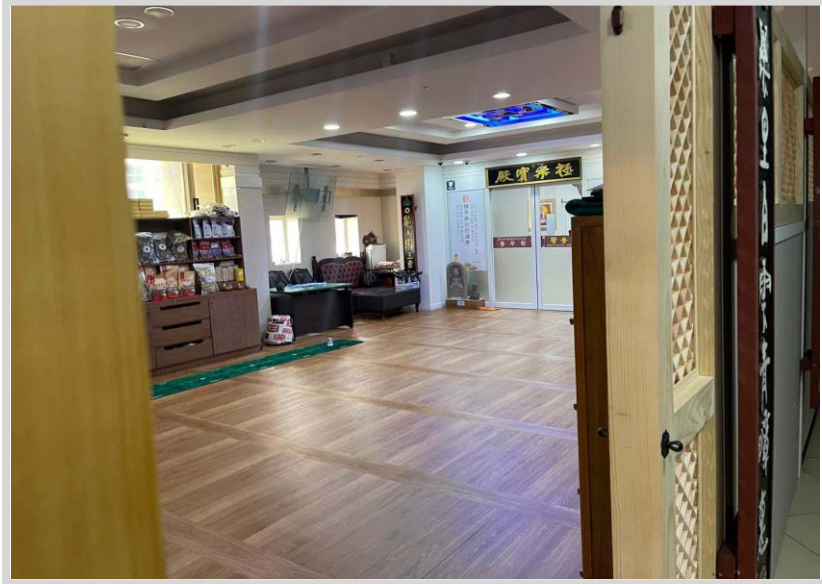


본건 건물 전체 전경



본건 기호 1) 전경

#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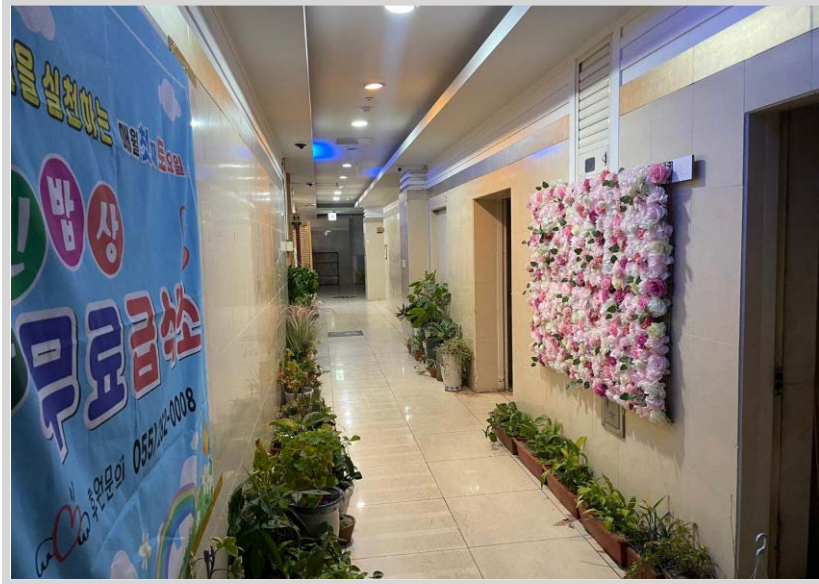


본건 기호 1-1) 전경



본건 기호 1-2) 전경

# 사 진 용 지



복도 전경



주위 환경

# 수수료 청구서

감정서번호: 가람 1124-12-00084

2024.12.31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법보좌관 이경규 귀하

### 이백구만칠천칠백원정(₩2,097,700.-)

2024.12.18일자 귀 제『2024타경107203』호로 우리 법인에 의뢰하신『방선희 외 2명 소유물건(2024타경 107203)』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 청구 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구내역-

과목	금액	비고
감정평가수수료	₩1,658,400	$(1,145,000 + (1,160,000,000 \times 8/10,000)) \times 0.8 \approx 1,658,400$
실비		
여비	212,0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30,000	
공부발급비	1,500	
기타실비	6,000	
비		
자료수집비	-	
소계	249,500	
특별용역비	-	
공급가액	1,907,000	1,000원 미만 절사
부가세	190,700	
합계	2,097,700	
기납부착수금	0	
정산청구액	₩2,097,700	

#### ■ 송금처

제일은행( 781-20-029248 ) 예금주: (주)가람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 ■ 수수료 입금 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 번호 1124-12-00084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16조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이 의무화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는 거래처는 입금 후 바로 전화 주십시오. 연락이 안 될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겠습니다.

(주)가람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장

TEL: 055-245-0054 FAX: 055-245-0053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609-85-22598

# (주)가람감정평가법인

우)5132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7-1 신한은행 3층  
E-Mail: kaaram10@kapaland.co.kr 홈페이지: http://kaaram.com/

TEL: 055)245-0054  
FAX: 055)245-0053

문서번호 1124-12-00084  
시행일자 2024.12.31  
수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법보좌관 이경규  
참조  
제목 감정평가의뢰에 대한 회보

1. 우리 (주)가람감정평가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12.18 일자 귀 제 『2024타경107203』호로 의뢰하신 『방선희 외 2명 소유물건(2024타경107203)』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3. 우리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 16조의 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서 2011년부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을 폐지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오니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팩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미요청시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되며 추후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첨부 1. 감정평가서 1부  
2. 청구서 1부 끝.

(주)가람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장

